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26호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2013. 10. 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26호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13.1.29)함에 따라 이를 훈령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안 제2조)
 -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 위임 시 소송수임료 2천만 원 초과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 선임

-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 유사사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 허용

□ 청렴성 검증강화(안 제4~5조)

- 법률자문 의뢰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시 징계처분내역 열람 및 징계처분 전력자의 선임 제한
- 법률자문변호사의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신고 및 사후 해촉·해임

□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안 제6조, 제2조)

- 우리 청 및 그 소속기관 퇴직 후 일정기간(1년) 이내인 자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제한
-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의 과도한 편중 방지

□ 사후관리 강화 및 소송 운영현황공개(안 제8조)

- 외부 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 위임 현황 공개
- 업무성실도, 전문성 등 실적 평가 후 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한 자문의뢰 및 소송 위임 배제

3. 의견 제출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60, 팩스 042-472-3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3.10.00 중소기업청 훈령 제0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중소기업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사건등의 위임)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

4. 「변호사법」 제58조의18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 시효연장 등),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 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자문 의뢰)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청 업무관련 법령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
 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3. 기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②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자문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징계정보 조회) ① 법률자문 의뢰 및 소송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제5조(이해충돌 방지) ① 법률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법률자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부당한 알선·청탁
2. 중소기업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법률자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해임 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무원의 소송사건 위임 제한)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제7조(사례비 등의 지급) ① 소송의 위임에 따른 선임료(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세부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선임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2. 소송사건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
 4. 소송사건등의 중요도
-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 보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른다.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사후관리)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 위임 현황을 공개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의 업무성실도,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실적이 저조한 자를 차후 자문의뢰 및 소송 위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중소기업청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중소기업청 훈령
제148호, 2004.01.06)은 폐지한다.

【별지】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 법률자문위원(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① 금품 · 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 · 청탁, ② 중소기업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소속 :

성명 : (인/서명)

중소기업청장 귀중